저작권보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정보는 2016-10-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보호]

과거에 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는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이를 무단 또는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 1
1. 저작권보호 개관 4
1.1. 저작권보호 개요 4
1.1.1. 저작물 4
1.1.2. 저작자 7
1.2. 저작권 등록 등 8
1.2.1. 저작권 등록 8
1.2.2. 저작권 권리자 인증 12
1.3. 저작권위탁관리 13
1.3.1. 저작권위탁관리 13
2. 내 저작권 지키기 16
2.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16
2.1.1. 저작인격권 16
2.1.2. 저작재산권 18
2.2. 저작권 침해의 구제 23
2.2.1. 저작권 침해정지·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23
2.2.2. 불법복제물의 폐기, 삭제 및 계정 정지명령 등 26
2.2.3. 저작권 분쟁 조정 30
3. 저작물 이용하기 32
3.1.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 이용 32
3.1.1.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32
3.1.2.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32
3.2.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 37
3.2.1.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37
3.2.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41
3.2.3.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42
3.2.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43
3.2.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45
3.2.6.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47
3.2.7.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의 이용 53
3.2.8.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54
3.2.9. 그 밖의 저작물 이용 56

1. 저작권보호 개관

1.1. 저작권보호 개요

저작권보호 개요

1.1.1.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 및 2차적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합니다.

저작물은 사상·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입니다.

- 저작물의 개념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주요정책].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저작권법」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주요정책].

저작물의 구분	내 용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어문저작물은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되며,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극저작물	연극저작물이란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實演**)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춤의 동작을 악보처럼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기록한 '무보(**舞譜**)'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미술저작물에 포함됩니다.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형태의 건축물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사진저작물	사진저작물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영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하며, 지도가 대표적인 도형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형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좁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예컨대,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되며, 외국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그 밖의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합니다. 예컨대, 백과사전이나 명시모음집 등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7조).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시사보도는 그 특성상 여러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적은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사고의 단신이나 부고란, 날씨정보, 증권정보와 같은 객관적 사실의 보도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 법원은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 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개념

▪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1호).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했어야 하며, 창작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한다는 '공동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 한편, "결합저작물"이란 창작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된 경우에도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창작부분이 분리되어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컨대, 음악저작물은 곡과 가사가 분리되어 이용이 가능한 결합저작물에 해당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창작행위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 그 저작물은 유형에 따라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로 구분됩니다. 양자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다만,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

한편, 결합저작물은 각자의 창작부분이 개별적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창작부분에 대해 각각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됩니다.

-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3조제1항).
  -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3조제2항).
-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
  -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조제3항).
  -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조제4항).

1.1.2. 저작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됩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입니다.

- 저작자와 저작권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하 "저작권"이라 함)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 저작자의 추정
  -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저작자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8조제1항).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8조제2항).

※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4호).

※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5호).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가집니다.

- 업무상저작물의 개념
  -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1호).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제외)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업무 외에 학습교재 제작업무를 지시한 경우 해당 학습교재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급자가 저작물의 저작과 출판에 필요한 기획을 하고 작업팀을 구성하여 저작활동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평소 수령하고 있던 월 급여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저작활동을 수행하였다면 상급자의 비용으로 학습교재를 저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9. 3. 12. 선고 98나32122 판결).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참조 >

1.2. 저작권 등록 등

저작권 등록 등

1.2.1. 저작권 등록

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변동등록 포함)할 수 있으며,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

저작자는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의 개념
  -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주요정책].
- 저작권 등록 사항
  -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권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2항).
- 저작권 등록 절차
  - 저작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신청서)
    -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

    √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해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목록
    -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 목록

-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저작권 등록의 온라인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http://www.cro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위원회는 등록된 저작권을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1항·제3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등록신청인에게 저작권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 권리 등록의 효력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저작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변동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권리변동 등록 사항

▪ 저작권에 대한 다음의 변경사항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 또는 처분 제한
-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

※ “배타적발행권”이란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7조제1항).

※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출판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63조제1항).

▪ 권리변동 등록 절차

▪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아 신탁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의 변동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 다음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록 구분	신청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프로그램(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프로그램(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

√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해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목록
-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 목록
-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저작권 등록의 온라인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http://www.cro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위원회는 변동등록된 저작권을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1항·제3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을 한 등록신청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 권리변동 등록의 효력

- 권리변동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 무방식주의와 허위등록의 처벌

-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권리변경 등록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1.2.2. 저작권 권리자 인증

권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의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임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권리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권리자 인증의 의의

-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3호).

- 권리자 인증 절차

- 권리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권리인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이용허락인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 저작권 권리자 인증의 온라인 신청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시스템(http;//cras.copyright.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고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권리인증서(「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9호서식)
- 이용허락인증서(「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9호의2서식)

※ 저작권 인증기관의 지정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1.3. 저작권위탁관리

저작권위탁관리

1.3.1. 저작권위탁관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관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저작권 관리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위탁관리의 의의

▪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 한편, 저작자의 입장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 위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위탁관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저작권위탁관리를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저작물을 맡길 수 있습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
  -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트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6호).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신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저작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 허가를 받은 저작(인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신탁관리단체 현황 (2015. 5. 12. 현재)].

분야	신탁기관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www.koscap.or.kr)
	한국음반산업협회 (www.riak.or.kr)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www.fkmp.kr)
어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www.copyrightkorea.or.kr)
	한국방송작가협회 (www.ktrwa.or.kr)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www.scenario.or.kr)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www.korra.kr)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www.kfpa.net)
	한국영화배급협회 (http://www.mdak.or.kr)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kbpa.kr)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www.kpf.or.kr)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www.kcisa.kr)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의 이용방법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저작물의 제호 또는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하는 등 저작인격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민원포털 상담센터>

■ 저작권대리중개업

■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7호).

※ 저작권중개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의 이용 방법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는 달리 저작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 중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의 경우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위임 받을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그의 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중개를 거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대리, 중개가 이용자에 대해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대리,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_민원포털_상담센터>

2. 내 저작권 지키기

2.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2.1.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되며 저작인격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 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으로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1항).
  -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2항).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에 대한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3항).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표권의 의의
  -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제1항).
  -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5호).

  저작물의 공표 동의 추정·간주

-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제2항).
- 또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1조제4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름도 표시해야 합니다.

- 성명표시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성명표시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1항).
- 성명표시 의무
  -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2항 본문).
  -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2항 단서).

※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재학생의 산문을 교과서에 실으면서 지은이를 해당 학생의 이름과 다르게 표시한 것이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문교부가 산문의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으로 표시한 이유가 교육정책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귀속권을 침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용·형식 등의 변경 없이 본래의 모습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1항).
  - 이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로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 동일성유지권의 적용 제한
  -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2항).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인 경우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음악의 일부를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 미리 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음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 한편, 법원은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는 경우인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상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인격권 침해 시 벌칙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1호).

2.1.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저작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하거나 기증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 저작재산권의 개념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Bag」).

▪ 저작재산권의 종류

▪ 저작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및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Bag」).

저작재산권 구분	내용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2호 및 제16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컴퓨터 장치를 이용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내려받는 것도 복제에 포함됩니다.
공연권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설·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그렇게 공개된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및 제17조). 예컨대, 영화관에서의 영화 상영, 무대에서의 연극이나 무용, 청중을 상대로 한 강연이나 유세 등이 공연에 해당하며, 녹음하거나 녹화한 복제물(음악 CD, 비디오 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하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및 디지털음성송신권이 포함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및 제18조). √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이 방송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8호). √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를 말하며, 저작물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거나 올려진 저작물을 이용자가 클릭할 때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송신되도록 하는 것이 전송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방식의 음을 송신(전송은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웹캐스팅(이른바 '인터넷방송')의 방식으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1호).
전시권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은 공중이 직접 접근하여 보거나 만져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권리로서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배포권	원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3호 및 제20조). 예컨대, 구입한 책을 재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 등이 배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포권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후에는 다시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여권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제작물이 수록된 음반이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1조).

2 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

※ 음악저작권 침해와 표절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음악은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 유사한 경우 이를 침해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저작권 침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저작재산권은 양도하거나 기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양도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본문).

  ※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단서).
- 저작재산권의 기증
  -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제59호서식).
    -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
    - 기증저작물의 복제물
    -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지 제60호서식).

권리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2항).
  -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항).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70년간 보호됩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시작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저작권법」 제44조).

※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시행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저작권법」(법률 10807호)].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2011. 6. 30.) 제2조].

즉,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종전과 같이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반면,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개정 저작권법(법률 10807호)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기획재정부,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13. 6. 28.), 107면].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원칙
  - 저작재산권은 아래의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1항).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2항).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1항 본문).
    - ※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1항 단서).
  - 다만,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권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2항).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1조 본문).

▪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1조 단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재산권 침해 시 벌칙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 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제1호)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이라 함)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93조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위에 따른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93조제2항).

2.2. 저작권 침해의 구제

저작권 침해의 구제

2.2.1. 저작권 침해정지·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정지 및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침해정지 청구권 및 침해예방 청구권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 제외)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 침해정지 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는 행위(「저작권법」 제124조)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위의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위의 수입 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이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봄)

▪ 가처분 신청

▪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저작권법」은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3항).

▪ 가처분은 본안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잠정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처분결정 후 나중에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자가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4항).

※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의 추정 및 인정

-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 또한,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이용허락에 대한 통상적인 사용료)를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2항).

※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이 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3항).

▹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 과실의 추정

▹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4항).

※ 법정손해배상 청구

▹ "법정손해배상" 제도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및 증거 확보의 곤란함을 보완하고, 향후 침해를 억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제1항).

√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법정손해배상에서 하나의 저작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제2항).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요건

√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제3항).

√ 따라서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위자료청구권

▪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

▹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 청구권
  -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7조).
  -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에 적당한 조치나 저작물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2.2.2. 불법복제물의 폐기, 삭제 및 계정 정지명령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또는 전송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정지를 명하거나 불법 전송자에 대해 계정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은 수거·폐기 또는 삭제됩니다.

-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이하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이라 함)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등의 업무를 다음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2항 전단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 한국저작권보호원
    -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등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3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에 관한 규정이 다른 법률에도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우선 적용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6항).

온라인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이라 함)가 전송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

-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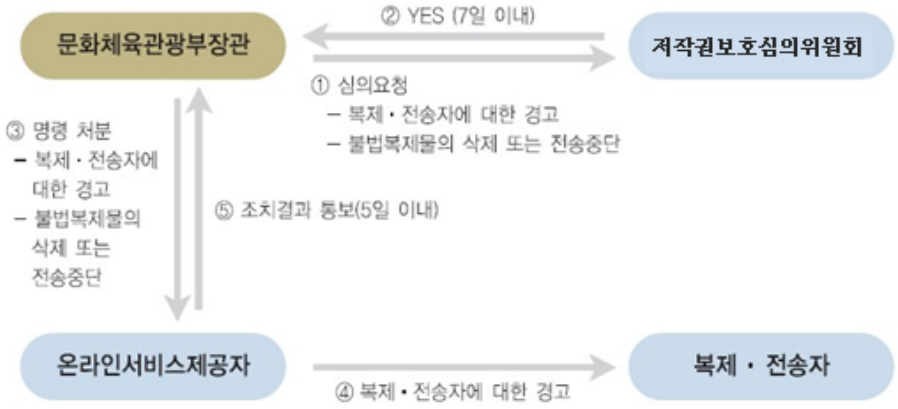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삭제·전송중단을 명하려면 경고 또는 삭제·전송중단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2,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 제57호서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7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6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5제1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

-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명령 이행 일자

※ 이를 위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 반복적인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2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계정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4호).

※ 계정 정지 기간(「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제3항)

- 1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 2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번째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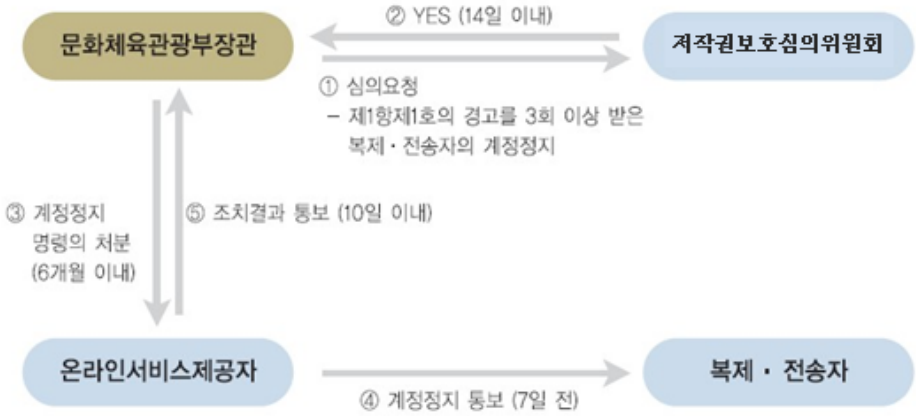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계정중지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 제57호서식).

- 복제·전송자의 계정
-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
- 정지 기간

▪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지체 없이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3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제4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자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6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5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

-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명령 이행 일자

※ 이를 위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4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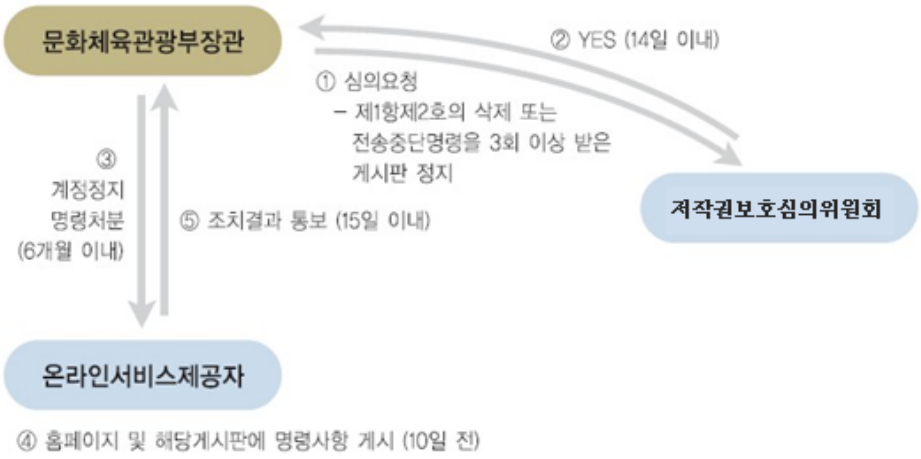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4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지 제57호서식).

-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 위법 행위의 내용
- 정지 기간

▪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5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서비스 정지 사실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명령 이행 일자를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6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5제1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2.2.3.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이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분쟁알선
  -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제6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
    -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알선의 개념

-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 알선신청을 받은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2항).
  -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선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3항·제4항).
  - 알선이 성립한 때에는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5항).
  - 알선이 성립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 「민법」상 화해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1조).
-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 분쟁조정
  -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4조의2제1항).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 조정부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조정을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5항).

▪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1항).

▪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재판상의 화해의 효력이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2항).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3. 저작물 이용하기

3.1.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 이용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 이용

3.1.1.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항).

※ 저작물 이용허락의 형태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여러 사람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이용을 허락해 주는 경우로서 이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들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은 없습니다.

한편,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해 준 경우 저작재산권자를 상대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이용허락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3.1.2.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누구든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89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함)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 함)

나. 해당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다음 사항을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http://www.findcopyright.or.kr)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

√ 저작물의 제호

√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 저작물의 이용 목적

√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

√ 공고자 및 연락처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저작권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에 해당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3항 본문).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3항 단서).

※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은 이용자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68조제1항제4호 참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홈페이지의 <저작권자 찾기 – 저작권자 검색 및 상당한 노력 신청 – 소개 및 이용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승인 절차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서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신청을 받으면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신청을 기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된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4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 보상금의 공탁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1항).

  -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다음의 사항을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cst.go.kr)와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http://www.findcopyright.or.kr)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

    -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
    -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
    - 저작물 이용의 내용
    - 공탁금액
    -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 공탁근거
    -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성명

- 승인연월일 등의 표시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저작물에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2항).

저작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1조).

- 상업용 음반의 제작

  -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2조).

- 승인절차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또는 상업용 음반의 제작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
-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상업용 음반의 제작 승인의 경우만 해당)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위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신청을 기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방송 또는 음반제작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을 받거나 상업용 음반제작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하거나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1조 및 제52조).

■ 보상금의 공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

■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해야 하며,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항).

3.2.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

3.2.1.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기증
  -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제59호서식).

※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애국가는 국가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애국가는 개인 작곡가의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그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인 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하고,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이 1965년에 작고하여 유족들이 저작권을 상속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은 2005년 3월 16일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불리기를 소망하며 고인이 사랑했던 조국에 이 곡을 기증합니다"라는 기증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가는 아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 저작재산권이 기증된 저작물은 <공유마당-공유마당소개-공유마당안내-기증저작물안내>에서 조회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저작물의 종류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보호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 미상)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저작권법」(법률 10807호)] .

※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2011. 6. 30.) 제2조].

※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방법인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 등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3제1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3제2항).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공익적인 취지의 UCC 제작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

- 공익적인 취지의 UCC제작에 짧은 음악과 함께 환경오염에 관한 사진 한 장을 삽입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UCC에 짧은 음악이나 사진이 포함되더라도 그 행위가 영리성이 없고,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음악 및 사진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만한 이용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허락표시(CCL)

  - "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 : CCL)"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라이선스정보-서비스 이용범위).

  -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CCL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되, 몇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라이선스정보-서비스 이용범위).

라이선스	이용조건	문자표기
	저작자표시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CC BY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CC BY-NC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C-ND

< 출처: CCKorea 홈페이지 >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저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공공기관과 공공저작물

-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그 밖에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말합니다(공공누리 홈페이지).

■ 공공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조건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누리 홈페이지>

■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전단).

■ 공공저작물의 이용

■ 공공누리가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이용허락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이용조건만 준수한다면 복제·배포·공중송신·공연·대여 등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공누리 홈페이지).

※ 공공누리 저작물

■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로서 공공저작물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고자 개발된

라이선스입니다.

▪ 공공누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홈페이지-공공누리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3.2.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 등을 목적으로 인용이 허용됩니다.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것

▹ 이용하는 저작물이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공표되지 않는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여기서 허용되는 인용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목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목적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면 공정이용으로 보기 힘들 것입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것

▹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의 판단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 인터넷 검색사이트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공정이용 해당 여부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이하 "썸네일 이미지"라고 함)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

①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사진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본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② 원본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해 압축된 크기의 썸네일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원본 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원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 공표된 저작물의 번역
  -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2항).
- 출처 명시 의무
  -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본문).
  -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고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3.2.3.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허용됩니다.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
  -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단서).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가정'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동거하는 가족 뿐만 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가정의 범위에 포함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친한 친구들 10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 100).

※ 다만, 인터넷은 이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인원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 100).

-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 그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업에 종사하는 복제업자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친구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수의 친구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나 블로그에 업로드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하는 등의 이용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저작권상담사례 100+」 >

- 개인적 이용 목적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3.2.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시사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은 허용됩니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6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의 요건

▪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하는 경우일 것

▹ 그 밖의 방법은 방송이나 신문과 같이 시사보도의 매체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잡지, 인터넷 신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일 것

▹ 저작물이 시사보도의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린다는 것은 보도되고 있는 사건의 현장에 있는 저작물이 방송이나 신문 등에 부수적, 우발적으로 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예컨대, 회화전시회의 개최상황을 보도하거나 체육대회 입장식을 라디오나 TV로 보도할 때 행진곡의 연주가 들리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인지 여부는 사회적 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사보도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취재대상의 배경에 등장하는 저작물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감상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라면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예컨대, 다음의 경우는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연극 상연을 방송으로 보도하면서 그 보도를 위한 목적을 넘어서서 장시간 방송하는 경우

√ 자선 콘서트를 보도하면서 연주된 음악을 전부 들려주는 경우

√ 미술전람회를 방문한 유명인사의 동정을 보도하면서 그 전람회에 전시된 모든 작품을 방송하는 경우

√ 잡지에 실린 사진과 관련한 보도를 잡지에 실으면서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을 이용하여 3면에 걸친 화보 형식으로 구성한 경우

▪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것

▹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복제·배포·공연 및 공중송신이 있으며, 공중송신에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하여 배포하거나 방송을 하는 것 외에 인터넷 신문 또는 온라인 신문에 게재하는 것, 웹캐스팅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 등이 모두 허용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시사보도의 목적을 넘어선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기사 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는 보도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진저작물이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 시사보도를 위한 번역
  -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2항).

3.2.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물의 공연·방송은 허용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의 요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표된 저작물의 공연·방송일 것
    - 영리적인 목적은 반드시 직접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리를 위한 것도 포함하는 비교적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영화를 선전하기 위한 무료시사회, 고객사은행사로서의 공연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공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에 미치지 못하고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정도에 그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을 위한 번역·편곡 또는 개작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의 공연은 허용됩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단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하는 다음의 공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 위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하는 공연

-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일 것

- 상업용의 음악 CD나 영화 DVD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재생하는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연주회, 가창대회, 시사회 등의 경우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디지털 음원(mp3 등)이나 디지털 형태로 된 영상저작물(복제물)도 그것이 상업용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 법령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백화점이나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음반을 틀어주는 것이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시중에서 구입한 상업용 음반일지라도 재생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고, 백화점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단서).

따라서 백화점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어주는 것은 위의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음식점의 경우는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지 않는 한 상업용 음반을 틀어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Bag」 >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의 공연을 위한 번역·편곡 또는 개작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3.2.6.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학교 교과서 게재는 허용됩니다.

-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항).
-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일 것
  - "교과용 도서"란 일반적으로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하고, 이는 다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분류되며 이들이 모두 교과용 도서에 포함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학습용 참고서는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사가 직접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참고자료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교과용 도서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것일 것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이 포함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보상금 지급 의무
  - 학교교육 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www.korra.kr)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4항 본문·제5항 및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26호, 2015. 8. 13. 발령·시행)].

※ 교과서에 저작물 게재 시 보상금은 「2015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52호, 2014. 12. 3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 참고서를 만들면서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학습을 위한 참고서나 자습서, 입시학원의 교재, 대학교 이상의 교재 또는 직원교육을 위한 교재 등은 「저작권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재에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Bag」 >

※ 화가의 그림이 화가의 허락 없이 중학교 미술교재에 실린 경우 화가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

따라서 화가의 그림을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게재하더라도 이는 화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화가는 이러한 보상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를 통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Bag」 >

■ 학교 교과용 도서 게재를 위한 저작물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 출처 명시 의무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교육기관 수업 목적의 저작물 복제·배포 등은 허용됩니다.

■ 교육기관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본문).

※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단서).

■ 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3항).

■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

■ 교육기관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0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기술적 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교육기관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다음의 교육기관 또는 다음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일 것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지정직업훈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 이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저작권 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

- 보상금 지급 의무

- 교육기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www.korra.kr)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4항 본문·제5항 및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4항 단서).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구분 >

구분	근거법률	교육기관	보상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예시)	「평생교육법」	각종 평생교육기관	지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유치원	면제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	면제
「고등교육법」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지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예시)		중앙공무원교육원 시도교육연수원 교육청 교사연수시설	지급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교육기관 수업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20호, 2015. 7. 24.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 수업목적의 저작물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
  - 학교 및 교육기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 출처 명시 의무
  - 학교 및 교육기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학교 등에서의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는 허용됩니다.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본문).
  -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 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단서).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의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복제·배포할 것
    - 시험 또는 검정은 입학시험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치르는 시험이나 검정이라도 학식 및 기능에 관한 것이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사시험 등의 선발시험, 모의테스트 등의 학력평가시험, 운전면허시험 등의 기능검정 등도 대상이 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모아 복제하여 시험문제집(기출문제집)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나 예상문제집에 싣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험문제 그 자체로서 복제해야 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출판사가 문제집을 제작하면서 특정 교수의 기말고사 문제를 뽑아 이용한 경우 해당 교수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본문).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32조 단서).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을 각종 평가를 위한 시험 문제에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혹은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수는 자신이 출제한 기말고사 문제를 뽑아 문제집을 발행한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Bag」 >

- 시험문제로서의 이용을 위한 번역
  -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하여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2항).

3.2.7.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의 이용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의 저작물의 복제는 허용됩니다.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3조 본문).
  -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3조 단서).
- 재판절차에서의 복제의 요건
  -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당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것
    - 재판절차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공표된 저작물인지의 여부를 묻지는 않지만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을 가지므로 그 공표권을 존중하면서 이용해야 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이용일 것
    - 재판절차는 법원에서 하는 재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준사법적 절차, 즉 특허심판원, 해난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행하는 각종 심판이나 조정, 중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절차 등도 포함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법원 등 국가기관 및 재판당사자 등이 복제할 것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에 있어서는 재판절차를 위한 필요가 인정되면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 변호사, 감정인 등이 준비서면이나 의견서의 내용에 포함하거나 참고자료로 첨부하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재판절차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복제하고,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의 저작물 복제의 요건

-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부당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것
- 입법 및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로로서만 이용할 것
  - 입법목적을 위한 경우는 법률안 심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예산안심의, 국정조사 그 밖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며, 대법원의 규칙제정, 정부의 조약체결, 행정각부의 부령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행하는 조례 제정 등도 입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포함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행정목적을 위한 경우는 행정청이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 참고자료로서 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그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으면 입법 또는 행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일 것을 요합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내부자료'로 복제하는 것만 허용되므로 행정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홍보자료와 같이 외부에 널리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저작권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국회 등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복제할 것
-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한도에서 복제하고,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의 번역
  -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저작물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2항).
- 출처 명시 의무
  -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로서 그 한도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번역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본문).
  -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3.2.8.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재판·수사, 교육기관 수업·교과서 게재, 사적사용, 시험출제 등의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임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제1항).

  -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복제하는 경우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그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함)

  ※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6호).

-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해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함)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제2항).

- 보상금 지급

  - 컴퓨터 프로그램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제3항).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컴퓨터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임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4제1항).

※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은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회사나 개인이 어떠한 물건을 구입한 후 그 제품의 기술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그 제품을 분해 또는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은 대부분 목적코드(object code)의 형태로 되어 있어 그

자체로는 내용을 알아볼 수 없고 따라서 특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목적코드를 원시코드(source code)로 역변환(decompile)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는 반드시 이러한 역변환의 과정이 따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가 수반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 또한, 역변환에 의해 그 원래의 원시코드와 유사한 원시코드(cousin source code)를 만들고 그것에 기해 흐름도(flow chart)를 작성하는 것 역시 「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의 복제에 해당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저작권법」에 이를 허용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01조의4에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규정을 두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유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상생협력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4제2항).

▹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 정당한 이용자의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등

▪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해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5제1항).

▪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복제한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

▹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아도 됩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5제2항 단서).

▪ 컴퓨터 프로그램의 임치

▪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임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7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위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7제2항).

3.2.9. 그 밖의 저작물 이용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도서관 등은 조사·연구, 절판, 도서의 보존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하거나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조사·연구, 보존 등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는 허용됩니다.

- 도서 등의 복제

  - 도서관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1항 본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

    -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 위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 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합니다.

    -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도서관 등의 개념

- "도서관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

  √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 도서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복제·전송

  -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2항 후단).

  -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3항 본문).

    -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인 경우 그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3항 단서).

-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보존을 위한 복제

  -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해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8항).

- 도서 등의 디지털 형태의 복제 금지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저작권법」 제31조제2항) 또는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저작권법」 제31조제3항)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4항).

-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도서관 등이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4항).
-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일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1항 단서).
-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1항 단서).

- 보상금의 지급

- 도서관 등은 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저작권법」 제31조제1항제1호)로서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②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저작권법」 제31조제3항)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본문 및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 2016. 7. 29. 발령·시행)].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을 제외)의 경우에는 위의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단서).

-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

-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도서관 등은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7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

  -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 조치

  √ 도서관 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위해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해 자체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4조제1항).

위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다음의 시설 내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4조제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

-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등은 허용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 등"이라 함)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3조제1항·제3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

- 시각장애인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3조제2항).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특수학급을 둔 각급 학교

√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 시각장애인을 위해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

▪ 누구든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3조의2제1항·제3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3).

▪ 청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3조의2제2항).

※ 청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청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어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을 위해 특수학급을 둔 각급 학교

√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